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83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이훈기·김정호·김태년

이정문 · 조인철 · 위성락

박민규 • 서영교 • 전현희

이병진 • 노종면 • 박희승

박홍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연구기관"이라 함) 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, 이러한 사태는 연구 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 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.

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

12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 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원장의 임면 및 임기) ①	제12조(원장의 임면 및 임기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
	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
	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
	에 착수하여야 한다.
<u>⑤</u> · <u>⑥</u> (생 략)	<u>⑥</u> ・ <u>⑦</u> (현행 제5항 및 제6항
	과 같음)